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30호 2022. 9. 13.(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5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6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가.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토록 명시(안 제5조)
- 나.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 수립토록 명시(안 제6조)
- 다. 조문 문구 수정(안 제7, 9조)
- 라. 공약이행평가단 구성방법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변경(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기획예산실
- 연 락 처 : 전화 032-749-7084, FAX 032-749-7079
- E- mail : pow9728@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마.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개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를 “한다. 이 경우 확정기한은 취임 후 100일 이내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를 “제5조제4항” 으로, “대하여” 를 “대하여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로, “고려하여” 를 “고려한” 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구”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를 “구 홈페이지” 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단 단위 위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무작위추첨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 만료 또는 결원에 따라 새로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약사항 및 시행계획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시행계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u>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추진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에 <u>대하여</u> 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u>고려하여</u>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u>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u> 내용을 공개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 ③ (생략)</p>	<p>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한다. 이 경우 확정기한은 취임 후 100일 이내로 ----.</p> <p>⑤ <u>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① ----- 제5조제4항----- ----- 대하여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 고려한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략)</p> <p>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u>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u>에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공개한다.</p> <p>제9조(이행실적 공개) ① 추진단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연 2회 이상 <u>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u>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p> <p>② (생략)</p> <p>③ 추진단장은 <u>홈페이지</u>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p> <p>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 ② (생략)</p> <p>③ <u>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행과 같음)</p> <p>④ ----- 구 ----- -----.</p> <p>제9조(이행실적 공개) ① ----- ----- ---- 구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구 홈페이지</u> ----- ----- ----- -----.</p> <p>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u></p>

현행	개정안
<p>제11조(단원의 임기 등)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생략)</p>	<p><u>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u></p> <p>제11조(단원의 임기 등) ① ----- ----- -----, <u>한 차례만</u>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2.5.19.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삭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체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로 모호해진 용어 등을 정비하고 개념 명확화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내용이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별지 서식 삭제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0조, 제19조, 제24조 삭제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제9호, 제17호 삭제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제3호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삭제로 ‘산하기관’ 용어 설명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20조의2 제4호 및 제5호의 ‘산하기관’ 용어 정비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삭제로 ‘서면’ 용어 설명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의 ‘서면’ 용어 정비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제30조제1항의 인용 조문 수정

다.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 1) (약칭 이동) 제2조제1호제바목, 제2조제1호제아목
 - 제2조제1호제바목 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 제2조제1호제아목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 구
- 2) (약칭 적용) 제21조제3항제1호, 제32조제2항
 - (구)소속 공무원 → 공무원

3) (자구 붙여쓰기) 제21조제6항, 제28조제2항

- 금품 등 → 금품등

4) (불필요한 한자병행표기 삭제) 제28조제2항

-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 →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0.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25, FAX 749-7049

○ E-mail : jingy2000@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가. [붙임1] 규칙 개정(안)

나.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규칙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를 “구” 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 를 “전가(轉嫁)”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1조제3항제1호 중 “소속 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품 등” 을 “금품등”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서면” 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금품 등” 을 각각 “금품등” 으로,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 를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9조” 를 “제29조” 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을 “공무원에 대한”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9조,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가. ~ 마. (생 략)</p> <p>바. <u>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u></p> <p>사. (생 략)</p> <p>아. 그 밖에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u>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p> <p>2. ~ 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p> <p>사. (현행과 같음)</p> <p>아. ----- 구----- -----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u>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u></p>	<p><삭 제></p>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단,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재배치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및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
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
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
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공무 <삭 제>

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삭 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

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 <삭 제>

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 <삭 제>

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

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삭 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1. ~ 2. (현행과 같음)
3. -----

-----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 8. (생략)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
----,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공무원-----

--

2.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
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략)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

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
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
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미
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
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
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

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

제28조(징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계규칙」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 (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관·관리) ①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략)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생략)

-----, -----

----- 금품등 -----

-----.

제30조(기록·보관·관리) ① -----
----- 제29조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에 대한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